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19가단524007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 고 1. 주식회사 A (구상호 : 주식회사 B)

2. C

3. D

4. E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래

담당변호사 황봉환

변 론 종 결 2020. 9. 25.

판 결 선 고 2020. 10. 2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및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733,949원 및 그 중 46,117,318원에 대한 2019. 8. 29.부터 2019. 12. 6.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파주시 F 답 4,109㎡에 관하여
 - 가. 피고 C과 피고 D, E 사이의 2018. 8. 6.자 매매계약을 53,699,45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 D, E은 원고에게 53,699,45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파주시 G 전 853㎡에 관하여
 - 가. 피고 C과 피고 D, E 사이의 2018.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D, E은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8. 12. 23. 접수 제824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본 사실

가. 피보전채권

- (1)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을 받아 2012. 6. 1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과 신용보증약정을 한 후, 보증원금이 50,000,000원, 보증기한이 2013. 6. 13.까지로 정해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이후 보증원금과 보증기한이 각 45,000,000원, 2019. 6. 7.까지로 변경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2. 6. 11.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H에서 기업운전일반자금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당시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추가보증료 등(제10조 제1항),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제10조 제2항) 등도 변제하기로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대출기한을 2019. 6. 7.까지 연장하였다가 2018. 4. 3. 국세체납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2019. 8. 29. 주식회사 H에 보증원금 45,000,000원을 포함하여 46,140,4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대위변제금 중 23,092원을 회수하였고, 이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6원이며, 미수추가보증료는 151,640원이고, 법적 절차비용 미수는 2,464,985원이다.

한편 신용보증약정서 상 손해금율은 2016. 1. 31.까지 연 12%, 2016. 2. 1.이 부터는 연 10%이다.

나. 피고 C의 처분행위

(1) 피고 C은 2018. 8. 6. 파주시 F 답 4,109㎡(이하 “F 토지”)를 피고 D, E에게 매매하고 2018. 9. 18.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C은 2018. 8. 31. G 전 853㎡(이하 “G 토지”)를 피고 D, E에게 근저당권 설정하고, 2018. 12. 2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C의 채무 및 재산

(1) 재산 : 약 10억 원

순번	재산	가격(원)
1	서울 서대문구 I아파트 J호	494,000,000
2	파주시 F 답 4,109㎡	128,200,800
3	파주시 G 전 863㎡	26,613,000
4	서울 관악구 K건물 L호	4,810,000
5	서울 관악구 K건물 M호	6,370,000

6	파주시 N 대 413㎡	144,963,000
7	O 도로 151㎡(30/151)	3,510,000
8	P 대 19㎡	6,669,000
9	Q 도로 38㎡	4,446,000
10	R 대 91㎡	31,941,000
11	S 도로 31㎡	3,627,000
12	파주시 T 답 1,911㎡	168,932,400
합계		1,024,082,200

(2) 채무

- 신용정보조회결과(갑 제11호증) 상의 채무 : 약 17억 원
-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채무 : 약 12억 원
- 원고에 대한 채무 약 48,000,0000원
- 피고 D에 대한 근저당채무 2억 원

【근거】 피고 3, 4 : 갑 제1 내지 22호증

피고 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회사, C에 대한 판단

위 기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법적 절차비용 등의 합계 48,733,949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46,117,318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19. 8. 29.부터 소장 최후 송달일인 2019. 12. 6.까지 약정 상의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 E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F 토지를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돈으로 바꾸고, G 토지를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선의 항변

(가) 피고들은, F 토지는 2018. 8. 6.자로 1억 8,600만 원에 매수하여 2018. 9. 19.까지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정상 매매에 해당하고, G 토지는 C이 3,400만 원의 대여를 요구하여 매매대금 1,600만 원과 함께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서 대여채권의 담보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 D이 C에게 2018. 7. 24.자 50,000,000원, 2018. 8. 6.자 20,000,000원, 2018. 9. 13.자 50,000,000원, 2018. 9. 18.자 50,000,000원, 2018. 9. 19.자 50,000,000원 등 합계 202,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을다 제1, 2호증 참조).

그러나 피고 D은 이 사건 이전인 2017. 3. 3. C이 소유한 위 I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적이 있는 점(갑 제12호증 참조), F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의 지급 행태가 통상적인 매매대금의 지급 행태와는 다른 점, F토지의 취득 경위에 관한 변론이 일관되지 않은 점, G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된 차용증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담보 가치 부존재 항변

(가) 피고들은, 각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각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나)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 F 토지의 2013. 12. 19.자 주식회사 U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254,950,000원에 대한 분담액은 46,209,711원이고, 이는 F 토지의 가액 128,200,800원¹⁾ 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일반채권자들을 위하여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 재산 부분이 존재한다.

공동 담보 부동산	공동 담보 부동산의 가액(원)(갑 17호증)	분담액(원)
F 토지	128,200,800	46,209,711

G 토지	26,613,600	9,592,817
서울 관악구 K건물 13층 V호	507,000,000	182,747,092
서울 관악구 K건물 2층 W호	45,500,000	16,400,380
합계	707,314,400	254,950,000

○ G 토지의 X 주식회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²⁾에 대한 분담액은 21,320,988원이고, 이는 G 토지의 가액 26,200,8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일반채권자들을 위하여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 부분이 존재한다.

공동 담보 부동산	공동 담보 부동산의 가액(원)(갑 17호증)	분담액(원)
F 토지	128,200,800	21,320,988
G 토지	26,613,600	4,426,090
서울 관악구 K건물 L호	4,810,000	799,948
서울 노원구 Y아파트 Z호	598,000,000	99,452,974
합계	707,314,400	126,000,000

○ 결국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각 토지의 가격을 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1) F 토지 : 가액배상

○ 선순위의 주식회사 U의 2013. 12. 19.자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X 주식회사의 2017. 1. 6.자 채권최고액 1억 2,6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사해행위 이후 각 2018. 12. 11.자 및 2019. 3. 21.자로 말소되었으므로, F 토지의 가액에서 각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기로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 F 토지의 책임재산 부분은 그 가액 128,200,800원에서 피담보채권액의 분담금 67,530,699원(= 46,209,711 + 21,320,988)을 공제한 60,670,101원이다.

○ 2018. 8. 6.자 매매계약을 원고가 구하는 48,733,949원 및 그중 46,117,318원에 대한 2019. 8. 2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9. 25.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포함한 53,699,45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구상채권 원리금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지급을 명한다.

(2) G 토지 : 원물반환

2018.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한다.

4.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훈

1)피고들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186,000,000원이 F 토지의 객관적 가격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128,200,800원(2020. 8. 21.자 준비서면 참조)은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그대로 인정한다.

2)실제 피담보채권액을 알 수 없으나, 원고 자신에게 불리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분담액을
계산하므로, 그대로 인정한다.